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0일, 이상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 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2.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식 의원)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
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둬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마련

개정안들은 지방공사·공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정부안 제49조제5항 신설 및 이상식의원안 제75조의7 신설).

이는 2023년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참여의사를 밝히자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를 반대하면서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적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사업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지역 관할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되고,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① 정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만을 거쳐 그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② 이상식의원안은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관할구역 외 사업 추진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관할구역 외 사업추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논란을 해소·완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이상식의원안과 같이 관할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합의”를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업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¹⁾들의 법적지위가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시행일의 경우 정부안은 “공포한 날”, 이상식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거나 제도시행을 준비·홍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공포한 날”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1)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골드시티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한편,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이미 충남 보령시, 강원 삼척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